

일 러 두 기

■ 전체 일러두기

1. 본 통계는 2012년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형사사건에 대해 3종의 범죄통계원표(발생·검거·피의자 통계원표)에 근거하여 전산 입력한 자료를 경찰청 수사국에서 집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것임
2. 통계의 단위는 건수와 인원으로 되어 있음. 건수는 발생통계원표를 토대로 한 ‘발생건수’와 검거통계원표를 토대로 한 ‘검거건수’로 구분 됨. 인원은 피의자통계원표 중 사건송치가 완료된 자연인 피의자이며, 범죄자특성 분석 시에는 자연인 피의자 중 기소중지자와 성별불상자를 제외하여 분석함
3. 범죄통계의 목적은 “범죄양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범죄통계의 분류에서 각 죄명의 분류는 “위반행위속성(범죄행위의 내용적 특징) 및 법익침해유형(범죄행위의 결과적 특징)”을 기준으로 함
 - 3-1. 다만,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범죄행위(위반행위속성)를 우선적 기준으로 하며(제1분류원칙), 범죄피해(법익침해유형)를 이차적 기준으로 함(제2분류원칙). 이에 따라 예전에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기타형법범죄 및 특별법범죄 등 7개분야로 구분하던 것을, 2011년도부터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의 15개 분야로 구분함. 세부적인 죄종은 범죄실태 파악 및 분석에 중요한 죄종을 추가로 제시하여 기존의 377개에서 398개로 확대됨

3-2. 특별법 위반 범죄는 기존에 특별법명에 따라 163개로 단순 구분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따라 분류하되, 기존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형태의 특별법(형식적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범에 통합(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9조의 강간 등 살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간 등 살인’ 항목에 통합)하였고,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특별법(실질적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별도로 제시함. 주로 경제범죄, 약물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공안범죄, 병역범죄가 이에 해당함

3-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폭력행위를 행사한 경우에는 폭력범죄 중 ‘폭력행위 등’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이 법을 위반하되 폭력행위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 등에 관련된 경우에는 ‘기타’에 분류함.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의 경우에는 지능범죄의 ‘직무유기’로 분류함

3-4. 기존의 강간범죄는 강간강제추행범죄로 용어를 변경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심으로 상세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속범죄’에, 성매매 관련 위반행위는 ‘기타범죄’에 분류함

3-5. 살인범죄는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기수와 미수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기수와 미수로 구분하여 제시함

3-6. 죄명 중 특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임

3-7. 자세한 죄명분류는 부록의 <죄명분류표> 참고

4. 소년범죄자의 연령은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19세미만이며, 고령범죄자의 연령은 65세이상임

■ 장별 일러두기

II. 범죄발생·검거 및 처리

1. '발생건수'

- 한 해 동안 경찰에서 인지한 사건을 말함
- 따라서,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에 의해서 인지된 사건은 제외되어 있음

2.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수를 같은 해 동안 검거한 사건수로 나눈 것
- 「2010 범죄통계」까지는 검거율, 「2011 범죄통계」부터는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로 수정함

3.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지역별' 통계는 '지방경찰청별' 통계임

4. 검거인원의 성별분류항목에서 '불상'

-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으로서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거원표는 작성하지 않으나 피의자원표는 작성함. 이때 피의자원표는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작성 가능한 항목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의자의 성별이 '불상'인 경우가 발생함

5. 검거자 중 '미상'

- 기소로 송치의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만 필수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불기소 및 기타의 경우에는 미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미상'으로 명명함

6. 송치의견 중 '사안송치'

- 대통령령 78조(송치 지휘등)에 의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중단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임.

Ⅲ. 범죄발생상황 관련 특성

1. 발생시간 중 '미상'
 - 범행발생시간을 모르는 경우를 의미함
2. 범죄의 발생지 항목 분류 방식
 - 범죄의 발생지 항목은 총 55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크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6지역), 기타도시, 도시 이외의 지역 등 4개로 구분
 - 기타도시는 행정구역상 시(市) 지역을 의미
 - 도시 이외의 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기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의미

Ⅳ. 범죄자특성

1. 범죄자특성에 관한 분석시 성별불상자 및 기소중지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011 범죄통계까지는 기소중지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시 주의를 요함
2. 범행시 성별 연령 중 '미상'
 - 범행시 범죄자의 성별은 구분이 가능하나, 연령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3. 범행시연령 중 '14세미만' 집계
 - 소년범죄자 처리규정 상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피의자원표를 작성하지 않으나 이러한 원칙이 일관성있게 적용되지 않아 촉법소년의 일부만 집계되었음. 따라서 이 통계만으로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4. 범죄자의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 범죄자를 기혼자, 미혼자, 미입력/미상으로 구분
 - 기혼자는 다시 '유배우자', '동거', '이혼', '사별'로 구분
 - 미혼자는 부모관계별로 '실부모', '계부모', '실부계모', '실부무모', '실모계부', '실모무부', '계부무모', '계모무부', '무부모'로 구분

5.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 「2011 범죄통계」까지는 각 정신상태 항목별로 남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는 남녀를 먼저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정신상태를 제시하였음
- '미상' 항목의 신설
「2011 범죄통계」까지는 미입력된 경우를 '정상'으로 집계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에는 '미상'으로 분류함. 따라서 연도별 비교시 주의를 요함

6. 범죄자의 국적

- 범죄자가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국적을 입력하지만, 한국인이거나 국적을 모르는 경우 입력을 하지 않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입력항목을 '한국' 국적으로 집계하였음
- 「2011 범죄통계」까지는 전체범죄자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각 국적별 구성비율을 제시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국적별 구성비율을 제시하였음

7. 범죄자의 전과

- 전과란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를 말함.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은 전과에서 제외함
- '미상' 항목의 신설
범죄자의 전과 중 '미입력' 항목은 송치의견이 기소인 경우에만 범죄자의 전과를 필수입력사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함. 「2011 범죄통계」까지는 미입력항목을 '없음'에 포함하여 집계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에는 '미상'항목을 신설하였음. 따라서 연도별 비교시 주의를 요함

8. 범죄자 범행시 전회처분

- 범죄자가 범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어떠한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벌금형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회처분이 없는 범죄자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음

- 범죄자 범행시 전회처분 중 '미상'항목의 신설
미상항목은 송치의견이 기소인 경우에만 범행시 전회처분을 필수입력사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함. 「2011 범죄통계」까지는 미입력항목을 '없음'에 포함하여 집계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에는 '미상'항목을 신설하였음. 따라서 비교시 주의를 요함

9. 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

- 전과가 벌금형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만을 집계하는 것인 반면에, 재범이란 본건 이전의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계속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것임. 전과가 있는 범죄자 수와 재범자의 수는 일치하지 않음

10. 범죄자의 공범관계 중 미상 항목의 신설

- 「2011 범죄통계」까지는 공범관계가 미입력된 경우 '단독범'에 포함시켜 집계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미상'항목을 신설하였음

V. 피해자 특성

1. 피해자 성별 연령

-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에 주된 피해자에 관하여만 입력한 것임
- 성별로 미상이 있는데, 연령별로도 미상 항목이 있는 이유는 피해자의 연령을 모르는 경우에 해당됨

VI. 범죄자 유형

1. “Ⅳ범죄자 특성의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범죄자 유형별 특성 분석시 성별 불상자 및 기소중지자는 제외하고 분석함. 「2011 범죄통계」까지는 기소중지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시 주의를 요함